

# 필리핀 (Philippines)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1954년(노령, 장애, 유족)과 2010년(사회연금)

## 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부조제도

## 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 : 민간 부문 근로자, 자영자와 가사근로자
  - 임의적용 : 해외 근로 필리핀 국민, 이전에 당연적용 가입자였던 자, 가입자의 비근로배우자
  - 특별제도 : 공무원 및 군인
- 사회부조 : 필리핀 국민 중 궁핍한 자

## 4 재원조달

- 가입자
  - 사회보험 : 31개의 소득등급에 따라 월 36.30~581.30페소 납부
    - 임의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 보험료의 합을 지불함; 임의 가입한 비근로 배우자는, 근로하는 배우자의 지난 월 소득에 따라 월 110~880페소의 감액된 보험료 납부
    - 가입자의 보험료는 현금질병급여 및 출산급여의 재원으로 쓰임
  - 사회부조 : 없음
- 자영자
  - 사회보험 : 31개의 소득등급에 따라 월 110~1,760페소 납부
    - 자영자의 보험료는 현금질병급여 및 출산급여의 재원으로 쓰임
  - 사회부조 : 없음
- 사용자
  - 사회보험 : 31개의 소득등급에 따라 월 73.70~1,178.70페소 납부
    - 사용자의 보험료는 현금질병급여 및 출산급여의 재원으로 쓰임
  - 사회부조 : 없음
- 정부
  - 사회보험 : 결손금 보전
  - 사회부조 : 총 비용

## 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 : 연금이 최초 지급되는 6개월(1~6월, 4~9월, 7~12월 또는 10~3월) 이전에 최소 120개월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60세; 광부와 같은 특수 직종 근로자들은 특정 조건 하에 더 일찍 퇴직할 수 있음
  - 65세 미만 연금수급자는 반드시 근로 또는 자영 활동을 중단해야함; 연금수급자가 근로 또는 자영 활동을 재개한다면 연금은 유예됨
  - 피부양자 수당 : 피보험자가 퇴직 전까지 낳거나 입양한 21세(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) 미만의 미혼, 실업 상태인 자녀 중 최연소 5명의 자녀에 대해 각각 지급
- 노령보조금(사회보험) : 보조금이 지급되는 6개월(1~6월, 4~9월, 7~12월 또는 10~3월) 이전에 최소 120개월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60세
- 노령사회연금(빈곤노인을 위한 사회연금제도, 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'빈곤퇴치를 위한 국가가정표적제도(National Household Targeting System Poverty Reduction, NHTS-PR)'에 의해 판정된 60세인 자

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 : 영구적으로 완전한 혹은 부분적 장애로 판단하며 장애 발생 6개월(1~6월, 4~9월, 7~12월 또는 10~3월) 이전에 최소 36개월의 보험료 납부기간 필요
  - 피부양자 수당 : 장애가 시작된 때 혹은 그 이전에 갖게 된 21세 미만의 미혼이고 실업 상태인 자녀 중 최연소 5명의 자녀에 대한 수당이 완전한 장애가 있는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됨
  - 부분장애 : 특정 신체 일부분 또는 그 기능이 영구적으로 완전히 상실되어야 하며, 장애가 시작된 6개월(1~6월, 4~9월, 7~12월 또는 10~3월) 이전에 최소 1달간의 보험료 납부기간 필요
  - 연금 수급자가 회복되거나, 근로를 재개하거나(완전한 장애인 경우), 혹은 연간 신체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연금은 유예됨
  - 추가 수당 : 장애연금수급자에게 지급
  - 사회보장청의 의사가 매년 장애 정도를 판단함
- 장애보조금(사회보험) : 영구적인 완전한 혹은 부분적 장애가 있어야 하며 수당이 지급되는 6개월(1~6월, 4~9월, 7~12월 또는 10~3월) 전에 36개월 미만의 보험료 납부기간 필요

## 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 : 사망자가 사망 6개월 기간(1~6월, 4~9월, 7~12월 또는 10~3월)전 최소 36개월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자
 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(장애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)인 미혼, 실업 상태에 있는 최대 5명의 부양 자녀를 포함
  - 배우자 유족연금은 재혼 시 중단됨

- 피부양자 수당 : 사망한 자의 자녀 중 최연소 5명의 21세(장애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) 미만의 미혼, 실업 상태인 부양 자녀에게 각각 지급함
- 유족수당(사회보험) : 사망 발생한 시점의 6개월 기간(1~6월, 4~9월, 7~12월 또는 10~3월) 이전에 36개월 미만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자
  - 수급자격 유족은 배우자와 자녀 중 5명의 21세(장애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) 미만의 미혼이고 실업의 상태인 자녀를 포함함.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다면, 급여는 부양 부모 또는 사망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됨
- 장제비(사회보험) : 장례비를 납부한 자에게 지급됨

## 6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# 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 : 다음 네 가지 산정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
  - ① 300페소 + 가입자 평균 가입소득월액의 20% +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년당 평균소득월액의 2%
  - ②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40%
  - ③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,200페소
  - ④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2,400페소
  - 평균가입소득월액은 다음 두 가지 산정액 중 많은 금액임
    - ① 최초로 연금을 수급하는 6개월(1~6월, 4~9월, 7~12월, 혹은 10~3월) 직전 60개월의 가입소득 총액을 60으로 나눈 금액
    - ② 최초로 연금을 수급하는 6개월(1~6월, 4~9월, 7~12월, 혹은 10~3월) 이전의 모든 가입소득월액 총액을 동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월수로 나눈 금액
  - 가입자의 제도 가입 연(年)수는 다음과 같음
    - ① 2002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납부 총 월 수 ÷ 12
    - ② 1985~2001년 사이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보험료를 납부한 매년(年)
    - ③ 1985년 이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1985에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한 연(年)을 뺀 수
  - 급여 산정을 위한 최소소득월액은 1,000페소, 임의 가입된 해외 근로자는 5,000페소
  - 급여 산정을 위한 최대소득월액은 16,000페소
  - 월 노령연금 상한선 없음
  - 부분일시금 : 가입자는 최초 18개월간의 연금액(피부양자 수당과 첫 해의 13번째 연금액은 제외)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선택할 수 있음.
  - 부양수당 : 노령연금의 10% 또는 250페소 중 큰 금액을 적합한 자녀 각각에 대해 지급
  - 지급일정 : 연간 13번 지급
  - 급여조정 :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 하에 물가와 임금 변동, 기금의 재정 상태에 따라 조정
- 노령보조금(사회부조) : <총 근로자 및 사용자 보험료 + 경과이자>에 해당하는 일시금

지급

- 노령사회연금(궁핍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연금제도, 사회보장, 필요성조사) : 월 500페소 지급

○ 영구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 : 다음 다섯 가지 산정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
    - ① 300페소 + 가입자의 평균 가입소득월액의 20% +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년당 평균소득월액의 2%
    - ②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40%
    - ③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,000페소
    - ④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,200페소
    - ⑤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2,400페소
  - 평균가입소득월액은 다음 두 가지 산정액 중 많은 금액임
    - ① 최초로 연금을 수급하는 6개월(1월~6월, 4월~9월, 7월~12월, 10월~3월) 직전 60개월의 가입소득 총액을 60으로 나눈 금액
    - ② 최초로 연금을 수급하는 6개월(1월~6월, 4월~9월, 7월~12월, 10월~3월) 이전의 모든 가입소득월액 총액을 동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월수로 나눈 금액
  - 가입자의 제도 가입 연(年)수는 다음과 같음
    - ① 2002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납부 총 월 수 ÷ 12
    - ② 1985~2001년 사이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보험료를 납부한 매년(年)
    - ③ 1985년 이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1985에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한 연(年)을 뺀 수
  - 급여 산정을 위한 최소소득월액은 1,000페소, 임의 가입된 해외 근로자는 5,000페소
  - 급여 산정을 위한 최대소득월액은 16,000페소임
  - 장애연금 상한선 없음
  - 부양수당 : 장애연금의 10% 또는 250페소 중 큰 금액을 적합한 자녀 각각에 대해 지급
  - 부분장애 : 완전장애연금의 일정 비율을 측정된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,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
  - 추가수당 : 월 500페소 지급
  - 지급일정 : 연간 13번 지급
  - 급여조정 :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 하에 물가와 임금 변동, 기금의 재정 상태에 따라 조정
- 장애일시금(사회보험) : 영구적 완전한 장애에 대하여, <완전장애연금 × 가입기간 월수 또는 12(둘 중 더 큰 값) ÷ 판단된 장애의 정도>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 : 사망자가 수급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 혹은 장애연금의 100%를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배분(수급자격이 없는 자녀에게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녀들 몫의 50% 지급)
- 배우자연금은 재혼 시 중단되며 수급 자격 있는 생존 자녀에게 배분

- 월 유족연금 하한선은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,000페소,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,200페소, 20년 이상인 경우 2,400페소
-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기간 년(年)수는 2002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 <가입자의 납부 총 월 수 ÷ 12>; 1985~2001년 사이의 가입기간에 대해 <최소 6개월 보험료를 납부한 매년(年)>; 1985년 이전의 가입기간에 대해 <1985 -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한 년(年)>
- 유족연금 상한선 없음
- 부양수당 : 사망자가 수급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월 노령 혹은 장애연금의 10% 또는 250 페소 중 큰 금액이 수급권이 있는 최대 5명의 자녀에게 지급됨
- 생존해 있는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가 없고, 연금 수급 첫 6개월 이내 사망 시, 6개월분 연금의 잔여금을 피부양부모에게 일시금으로 지급, 피부양부모가 없을 시 사망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
- 지급일정 : 연간 13번 지급
- 급여조정 :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 하에 물가와 임금 변동, 기금의 재정 상태에 따라 조정
- 유족일시금(사회보험) : <사망자가 수급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연금 × 가입기간 월 수 또는 12(둘 중 더 큰 값)>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- 장제비 : 20,000페소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
## 7

### 관리운영기관

- 사회보장위원회(Social Security Commission)
  - 3자(정부, 사용자, 근로자 대표) 대의원회로 구성
  - 총괄 관리, 감독 및 규제를 책임짐
- 사회보장청 (Social Security System)
  - 사회보험제도를 위한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지급
  - <https://www.sss.gov.ph>
- 사회복지개발부 (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)
  - 사회 복지 제도 관리
  - <https://www.dswd.gov.ph>

<2018년 ISSA 자료>